

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9. 5 평창군수(복지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1998. 9. 15
- 다. 상정일자 : 1998. 9. 16 제59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2차 본회의

2. 제안이유

-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건전생활지도 및 유해환경 정화등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지도활동을 위해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·위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을 규정함(안제2조, 제3조)
- 나.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를 규정함(안제4조1항)
 -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
 -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·장려 및 지원
 -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
 -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·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
 -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및 지원 활동등
- 다. 지도위원은 임무수행중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토록 규정함(안제4조2항)
- 라. 군수는 지도위원의 임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안제7조)
- 마. 지도위원의 효율적 지도활동과 상호협력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 할 수 있도록 군·읍면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규정할 수 있음.(안제9조)

4. 검토의견

- 기존의 「평창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」가 청소년육성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89년 7월 3일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다가
-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에 「평창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」는 폐지되는 것임.
- 본 조례안은 청소년 건전생활지도 및 유해환경 정화등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지도활동을 위한 지도위원의 자격·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 제정후 운영에 내실을 기할수 있는 행정력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것임.
- 기타 자구 및 내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